

제299회 임시회
교통위원회

안전을 누리고
서울을 즐기다

정관 개정 사항 보고

2021. 2. 26.


서울시설공단

『서울시설공단』

정관 개정 사항 보고

□ 보고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(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)

□ 개정 사유

- 「공공자전거」 확대 도입에 따른 필요인력 정원 반영
- 서울특별시 '노동이사제'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

□ 주요 내용

- 공공자전거운영처 정원 증원 ... 3급 이하 55명
 - ▶▶ 자전거관리직 53명 (배송 32 / 상담 9 / 정비 12), 설비 1명, 사무 1명

총 정원 증원 (현행) 3,757명 ⇒ (개정) 3,812명 (3급이하 +55명)

- 市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
 - ▶▶ (용어변경) 노동자이사제 → 노동이사제 /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
 - ▶▶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반영

□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 (2021. 2. 18, 완료)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※ 별첨 : 정관 개정 세부내용

정관 개정 세부내용

1. 개정사유

가. 공공자전거 양적·질적확대 및 코로나 시대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 확보로 시민이용 서비스 강화

- '자전거 및 대여소 확대' '정비점검 증가' 등에 따른 적정인력 확보
 - ▶ 기존 계약직 운영사항을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유지
 - ▶ '현장 배송인력', '24시간 콜센터 상담인력', '자전거 정비점검 인력' 증원
- 자전거·단말기 등 '정비 수요 확대' 에 대응한 정비분야 전문성 강화
 - ▶ 정비 전담 인력 등 정비기능 강화로 정비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
- 소형자전거 (새싹따릉이) 도입·운영 등 신규업무 운영체계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'전산인력' 강화

나. 市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('20.7.)
 - ▶ (용어변경) 노동자이사제 → 노동이사제 /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
- 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 ('20.7.)
 - ▶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정관에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자전거운영처 정원 증원 ... 일반직 3급 이하 55명

[자전거 현황]

| 구 분 | 2019 | 2020 | 2021 (계획)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자 전 거 | 29,500대 | 37,500대 | 40,500대 |
| 대 여 소 | 1,540개소 | 2,228개소 | 3,040개소 |
| 이용실적 (일평균) | 52,260건 | 64,768건 | - |

① 대여소 확대, 정비점검 증가 등 적정인력 확보 : 자전거관리직 +53명

- 상시 자전거 배송인력 필요 : 배송 +32명
 - ▶ 업무 변동 및 상시지속 업무에 따른 계약직원 최소화
 - ▶ 기존 일용계약직 배송인력 감축 : 110명 → 78명 (△ 32)
- 24시간 운영 안내센터를 위한 야간상담 인력 확보 : 상담 +9명
 - ▶ 야간시간 (22시~익일 07시) 콜센터 업무수행
 - ▶ 기존 일용계약직 상담 (야간) 인력 감축 : 9명 → 0명
- 자전거 정비건수 증가에 따른 적정 정비인력 반영 : 정비 +12명
 - ▶ 자전거 정비 및 점검 건수 증가로 연중 정비인력 필요
 - ※ 정비·점검 일 평균 건수 ... ('18년) 1,088건 → ('20년) 1,619건
 - ▶ 기존 일용계약직 정비인력 감축 : 12명 → 0명

② 이용수요 확대에 따른 정비 기능 전문화 : 설비 +1명

- 정비 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자전거 및 따릉이포 등 집중 관리

③ 따릉이 앱 시스템 등 전산분야 강화 : 사무 +1명 (전산)

- 소형자전거, MaaS (티머니 GO) 등 신규업무의 효율적 운영체계 관리
- 따릉이 가입회원 (231만명) 개인정보 보호·관리 강화

총 정원 증원 (현행) 3,757명 ⇒ (개정) 3,812명 (3급이하 +55명)

나.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

(안 제10조, 제11조, 제26조, 별표 3)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
 - ▶ (현행) 노동자이사제, 노동자이사 → (개정) 노동이사제, 노동이사
- 용어 변경에 따른 타 규정 개정 ... 부칙에 반영
 - ▶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, 노동자이사후보선거관리내규

다. 市 지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안건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신설 (안 제13조의2)

- 안건제출권 : '소관부서'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
- 정보열람권 : '소관부서'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'21년 서울공공자전거 운영 인력 운용 계획(안) (市 자전거정책과-12454호, '20.11.20.)
-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(市 공기업담당관-8948호, '20.7.22.)
- 서울시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해석 안내 (市 공기업담당관-1317호, '21.1.28.)
- 시설공단 돛경기장운영처 정원증원 요청관련 협의결과 통보 (市 건설혁신과-1946호, '21.2.15.)
-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(기능)

나. 절 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4. 개정사항

가. 정관 일부개정규정안 (신·구조문 대비표)

< 별표 3 > 현 행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3,757명】

임원 및 일반직

(단위 : 명)

| 구 분 | 계 | 임원 | 일 반 직 | | | |
|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
| | | | 소계 | 1급 | 2급 | 3급 이하 |
| 정 원 | 3,757 | 6 | 3,751 | 26 | 45 | 3,680 |

※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별도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

< 별표 3 > 개 정 안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3,812명】

임원 및 일반직

(단위 : 명)

| 구 분 | 계 | 임원 | 일 반 직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|
| | | | 소계 | 1급 | 2급 | 3급 이하 |
| 정 원 | <u>3,812</u> | 6 | <u>3,806</u> | 26 | 45 | <u>3,735</u> |

※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별도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